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박상우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- 2021년 5월부터 건설기능인에 직업전망 제시 및 체계적 양성·지원을 위해 건설기능인을 경력 등에 따라 등급으로 구분·관리하는 건설기능인등급제를 도입하고 시행해왔으며, 기능인등급제 시행을 계기로 2022년 7월부터 기능인의 전문성과 등급별 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등급제 연계 교육·훈련 사업을 추진
- 기능등급별로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「건설근로자법」에 따라 기능등급별 구분·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할 필요

3. 주요내용

-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별 구분·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건설기능인력 육성 및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(안 제87조 제2항 제8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87조의2

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4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7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능등급별 구분·관리 업무를 위탁한 기관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7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(생략)	제87조(권한의 위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.	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7. (생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8. 「 <u>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</u> 」 제7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능등급별 구분·관리 업무를 위탁한 기관
③ ~ ⑤ (생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546